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등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83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328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3
4. 검토의견	5
가.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등 (안 제18조의2 신설)	5
나. 행정처분 사유 추가 및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안 제19조)	12
다. 골재 품질검사 수행, 품질향상 및 연구 등 비용 지원 (안 제22조의4)	25
라. 건설현장 발생 토석의 골재 활용 강화(안 제34조의5)	31
마.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 신설(안 제45조)	38

I.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328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9. 25.

다. 회 부 일 : 2025. 9. 26.

2. 제안이유

골재는 국민이 이용하는 SOC 및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 일부 탈·불법 행위의 성행 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신규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 및 골재채취 기술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상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복지 실현,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건전한 골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골재는 주요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를 예정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골재채취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건설공사에 골재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골재채취업자 등은 품질이 확보된 골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재의 지속적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검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검사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고 더불어, 골재 품질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 연구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의 골재 수급 환경은 바다·하천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공급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자원을 활용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안정적 골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암석자원의 수급체계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 등 건설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은 건설공기 등의 사유로 암석 자원을 사토 처리하거나 단순 매립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등 암석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기에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원으로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 환경훼손 예방 및 골재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

고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제제효과 승계 방지 등 법령 운영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재채취업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 기술의 보급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현행 규정은 골재의 품질 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 등이 점검·조사 등을 거부·방해 하였을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8호의3 신설).

다. 골재채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정기 품질검사의 시기·횟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수행,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을 위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2항, 제8항 신설).

마. 공공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인 토석에 대하여 예산절감, 국토 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골재용 토석으로의 효율적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5).

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행정제재 승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4. 검토의견

가.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등(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골재채취업자의 교육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윤리, 품질,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 품질,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외의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와 관련된 기술능력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기준·철자 등 그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또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거나(신규 등록 골재채취업자: 교육 이수 의무) 실시할 수 있도록(기존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 재량) 하려는 것임.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입법례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에 따른 건설기술인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들 수 있음.

먼저,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¹⁾은 제1항에서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국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2)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음, ‘기술·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³⁾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⁴⁾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건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의2제3항⁵⁾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설근로자법」 제7조⁶⁾는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1의 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보급

1의 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기술·기능인력
교육·훈련 입법례 】**

구분		교육 또는 교육·훈련		결과 활용	교육기관 지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신규 등록 건설사업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의무 (6개월 이내)	-	교육기관 지정 가능
	기존 건설사업자		실시 가능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등 감경 가능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의무 <기본교육> 최초 업무 수행 전 <전문교육> -최초교육: 최초 업무 수행 전 -계속교육: 업무수행 기간 매 3년 경과 전 -승급교육: 승급 전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 가능	교육·훈련 기관 대행 가능 ※건설기술인 사용자 교육·훈련 경비 부담 ※대행기관에 비용 지원 가능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사업	실시 가능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 산정 가능	사업 위탁 가능 ※위탁기관에 경비 지원 가능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 「건설근로자법」 관련 조문 요약

개정안은 「골재채취법」에도 앞에서 살펴본 입법례와 유사한 교육 및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신규 등록 골재채취업자 및 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윤리, 품질,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신규 등록 골재채취업자: 교육 이수 의무) 실시할 수 있도록(기존 골재채취업자: 재량) 함과 아울러 골재채취업자 외의 기능인력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와 관련된 기술능력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채취업 종사자들의 법령 이해도 및 업무능력과 윤리·안전 의식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개정안에 따른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 교육 또는 교육·훈련
주요 내용(안 제18조의2 신설) 】

구분	교육 또는 교육·훈련		결과 활용	대행 및 비용 지원
신규 등록 골재채취업자 (안 제1항)	윤리, 품질, 재해 및 실무 등의 관련 교육	6개월 이내 이수 의무	-	관계 전문기관 또는 골재협회의 대행 가능 (안 제4항· 제5항) ※ <u>대행기관에 기능 인력 교육에 필 요한 비용 지원 가능(안 제6항)</u>
기존 골재채취업자 (안 제2항)		실시 가능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등 감경 가능	
기능인력 (안 제3항)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와 관련된 기술능력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훈련	실시 가능	-	

※자료: 개정안 제18조의2 주요 내용 요약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골재 사업장의 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미비한 상황인바, 골재채취업자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행정처분 사유 추가 및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1. ~ 6.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6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u><신설></u>	6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검사결과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7. ~ 8의2. (생략) <u><신설></u>	7. ~ 8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8의3.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u><신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골재

현행	개정안
<신설>	의 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골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은 ①골재채취업자가 현행법 제21조제2항7)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 신설)과 ②골재채취업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19조제1항제6호의3 및 제8호의3 신설)을 추가하고, ③골재채취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도입(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하려는 것임.

7) 「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감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할 수 있다.

먼저, ①골재채취업자가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1조제2항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판매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점검·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52조제1항제1호⁹⁾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21조제3항¹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골재

8) 「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감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할 수 있다.

9) 「골재채취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감독)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

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확인을 위해 골재채취업자에게 시설·장비·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52조제1항제2호11)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외에, 제19조제1항제7호12)에서 시설·장비·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을 통한 출입 검사와 관련하여,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준수 또는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 외에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¹³⁾가 있음.

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1) 「골재채취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개정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는 현행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유사 입법례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 확인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을 통한 조사·점검·검사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 규정 비교】

골재 공급·판매 등 규정	위반 시 제재
<현행법 제21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과태료: 현행법 제52조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13)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골재 공급·판매 등 규정	위반 시 제재
-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판매자에 대하여 보고, 서류제출 요구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점검·검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 개정안 신설>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제1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음, ②골재채취업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제19조제1항제6호의3 및 제8호의3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2조의4제1항¹⁴⁾은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판매업자에게 ㉠KS인증을 받은 골재 또는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19조제1항제8호의2 및 제49조의2제1호에서 각각 행정처분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1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19조제1항제8호의2¹⁵⁾는 KS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의2제1호¹⁶⁾는 처벌의 요건을 KS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㉔‘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 또는 판매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처벌 요건은 의무 규정인 현행법 제22조의4제1항과 유사하게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로 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요건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로 되어 있어 의무 규정이나 처벌 요건과 다소 차이가 있게 규정되어 있음.

15)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16) 「골재채취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골재 공급·판매 관련 의무 규정과 처벌 및 행정처분 요건 비교】

구분	KS인증 골재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의무 규정 (제22조의4제1항)	KS인증을 받은 골재를 공급 또는 판매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 또는 판매
처벌 요건 (제49조의2제1호)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
행정처분 요건 (제19조제1항제8호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현행법 제19조제1항제8호의2가 행정처분 요건을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골재’의 공급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19조제1항제8호의2에 규정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 외에,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 (안 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점검·검사¹⁷⁾한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안 제19조제1항제6호의3 신설)를 공급하는 경우 등도 해당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들을 각각 안 제19조제1항제6호의3 및 제19조제1항제8호의3으로 추가 규정함으로써,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공급 의무를 위반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보완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 규정 비교】

골재 공급·판매 등 규정	위반 시 제재
<현행법 제22조의4제1항>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판매자: 다음에	<행정처분: 현행법 제19조제1항제8호의2> ○골재채취업자: KS인증을 받지 아니하거

17) 「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점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점검·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점검·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점검·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골재 공급·판매 등 규정	위반 시 제재
해당하는 골재 공급 또는 판매 의무 - KS인증 골재(제1호) -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제2호)	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 공급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행정처분: 개정안 신설> ○골재채취업자: 제2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검사결과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안 제19조제1항제6호의3 신설) ○골재채취업자: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안 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벌칙: 현행법 제49조의2제1호>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판매업자: KS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음, ③골재채취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안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¹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8) 개정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골재의 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골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

골재채취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골재의 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골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일정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방식의 과징금으로,¹⁹⁾ 「건설산업기본법」,²⁰⁾ 「건축물관리법」,²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442.

2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1) 「건축물관리법」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²²⁾ 등의 입법례가 있음.

골재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²³⁾라는 특성상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골재 수급 및 건설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바,

개정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 사용자 등의 심한 불편이나 골재수급의 불균형 초래 등 공익 피해 여부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중 적절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업체에 대하여 골재납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3)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 [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동의하며,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골재 수급의 균형 및 관련 업체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골재 품질검사 수행, 품질향상 및 연구 등 비용 지원(안 제2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생략)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u>매년 1회 이상</u>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 ----- -----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할 수 있다. 1. <u>골재 품질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u> 2. <u>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u>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골재 품질검사 수행과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2조의4²⁴⁾는 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2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을 받은 골재(제1항제1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제1항제2호)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 제14조의7²⁵⁾은 골재 품질검사를 정기검사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수시검사로 구분²⁶⁾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골재 품질검사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48조의²⁷⁾에서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골재를 공급하려는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2조의4제2항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나,

-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6)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여건 악화로 저품질 골재 유통 유인이 증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중이라고 설명함.

-정기검사('22년부터, 연 1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검사 7일 전까지 통보)

-수시검사('23년부터): 국토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필요시 사전 통보 없이 진행)

27)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수시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시 요건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①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②골재와 관련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그 밖에 골재 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수시검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²⁸⁾

2023년 이후 실시한 골재 품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기검사의 경우 불합격률이 2023년 5.3%, 2024년 11.4%이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2023년 25.0%, 2024년 28.8%로 나타나 골재품질 수시검사의 효과성이 정기검사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골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시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3년 이후 실시한 골재품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표 】

기간	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업체	합격업체	불합격업체	불합격률	검사업체	합격업체	불합격업체	불합격률
2023년	753개	713개	40개	<u>5.3%</u>	28개	21개	7개	<u>25.0%</u>
2024년	702개	622개	80개	<u>11.4%</u>	52개	37개	15개	<u>28.8%</u>

※ 자료: 국토교통부

28)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시검사 비용은 품질관리전문기관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정기검사는 골재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골재채취업자가 그 골재의 품질을 담보하여 골재채취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반면, 수시검사는 사용자의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제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품질을 확인하는 성격의 검사라는 차이점도 있어 보이는바,

개정안은 국민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검사를 활성화하고 불량 골재로 인한 부실공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골재 품질향상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재료²⁹⁾인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외에 골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29)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 [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검사는 골재채취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KS인증 골재의 품질 검사도 정기검사 비용은 업체가, 수시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³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30) 골재품질 ‘수시검사’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골재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시판품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시판품조사’에 대한 비용 부담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부담하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43조(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인증기관,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 및 품질관리단체 등에 소속된 KS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 인력 등의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건설현장 발생 토석의 골재 활용 강화(안 제34조의5)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 -----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골재용 토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삭 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용 토석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³¹⁾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3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골재용 토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골재수급 기본계획³²⁾은 공급원별로 골재의 종류를 산림골재, 육상골재, 바다골재, 하천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선별·파쇄골재’는 바다골재 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골재선별·파쇄업³³⁾을 통해 공급되는 골재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별

32) 「골재채취법」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골재의 장기(장기)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골재원별)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33)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상골재채취업: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7.23>
6.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 파쇄골재의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활용하여 공급되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골재원별 골재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선별
· 파쇄골재는 연간 골재공급량의 30.5~45.3%로, 산림골재(연간 골재공급량의 32.6~40.9%)와 함께 주요 골재 공급원에 해당하며, 2022년 및 2023년에는 공급 비중이 각각 42.9%, 45.3%로 전체 공급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 골재원별 골재 공급 실적(2019~2023년)³⁴⁾ 】

(단위: 천 m³, %)

골재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림	공급량	88,892	96,653	94,899	76,735	72,550
	공급비중	38.7	40.9	38.9	33.0	32.6
육상	공급량	14,948	13,398	13,543	9,849	8,895
	공급비중	6.5	5.7	5.6	4.3	4.0
바다	공급량	2,324	7,412	8,834	8,875	4,268
	공급비중	1.0	3.1	3.6	3.8	1.9

34)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이전 차수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연도의 골재수급 실적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6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19~2023년)”에 해당하는 연도에 대하여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24~2028년)”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재함.

골재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천	공급량	854	1,006	725	640	630
	공급비중	0.4	0.4	0.3	0.3	0.3
선별·파쇄	공급량	70,160	85,140	90,450	99,560	100,850
	공급비중	30.5	36.1	37.1	42.9	45.3

※ 자료: 국토교통부,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24~2028년)” 2024.12. pp.5.-6.

*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 물량 집계치 + 공급 물량 중 허가·신고 누락분 추정치

골재 공급에서 선별·파쇄골재의 공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골재 채취법」에는 2019년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청으로 하여금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법 제34조의5³⁵⁾가 신설되었음.³⁶⁾

35) 「골재채취법」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36) 동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을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둌으로써, 골재수급 안정 및 불필요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의 효과에 대한 기대 등이 언급되었음.

(제369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9.7.17., p.20.)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공기 등의 사유로 암석 자원을 사토(捨土) 처리하거나 단순 매립 또는 성토용(盛土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24~2028년)에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이 단순 매립되지 않고 골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관 협회 및 단체와 함께 암석 매각 절차 매뉴얼을 제작하며, 암석 매각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안 등을 선별·파쇄골재와 관련된 골재원별 개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³⁷⁾

국회에서는 민간 및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용으로 활용·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³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37) 국토교통부,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2024~2028년)” 2024.12. p.14. 참고

3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97호, 2024.11.6.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신설>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 발주자 및 발주청이 -----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 순성토를 할 수 있는 토석이 없는 경우 2.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

계류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은 ‘발주청’이 ‘재량’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골재용 토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용 토석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자원의 골재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골재수급의 안정 및 국토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현행	개정안
<신설>	3. 암석을 사토하는 것이 순성토 하는 것보다 국토환경을 훼손하게 하는 경우
<신설>	4. 사토하는 암석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설>	5. 사토하는 암석이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생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용 암석을 사토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골재 주요 공급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암석 활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현장이 감소하고 암석자원 또한 단순 매립 또는 성토용으로 활용되어, 골재 수급 불안 및 불량골재 유통의 우려가 있는바, 암석자원이 대량 발생하는 대형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개정안과 같이 이를 골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 신설(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 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 등이 양수, 합병 또는 상속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골재채취업의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기간을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양수인 등에게도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 당시 양도인 등에 대한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등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7조³⁹⁾는 골재채취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39) 「골재채취법」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법 제45조⁴⁰⁾는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행정제재 효력 승계’를 규정하고 있음.

‘행정제재 효력 승계’는 처분 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의해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에게 처분 등 절차를 계속하는 제도임.⁴¹⁾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제 기준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승계되는 행정제재처분 등의 종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승계기간을 규정하고,

영업의 양수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지위 승계를 받을 때에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40) 「골재채취법」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4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 - ‘영업 양도·양수인 간 행정제재 효과 부당 승계 방지’ 제도 권고”, 2023.8.3.

규정을 둘 수 있으며,

통상 승계인에게는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승계인이 기존 행정처분 전력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개별 법령의 내용, 영업별 특성, 행정제재처분 승계를 인정할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승계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전력에 관한 정보를 승계인에게 통보하게 하거나 승계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⁴²⁾

또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제재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⁴³⁾

개정안은 행정제재의 효과 승계에 대한 법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양수인 등에게 1년간 승계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4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본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385.

43)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 - ‘영업 양도·양수인 간 행정제재 효과 부당 승계 방지’ 제도 권고”, 2023.8.3.

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양수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의 양수·상속·합병 시 양수인 등에 대한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⁴⁴⁾

44)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유사 입법례가 있음.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중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중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양수인이 부당하게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